

부속서 4-가

제4장에 따른 원산지 규정에 대한 원산지 증명 운영 절차

제4장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원산지 증명의 발급, 원산지 검증 및 그 밖의 관련된 행정 사안에 대하여 다음의 운영 절차가 준수된다.

규칙 1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 가. **인증수출자란** 수출된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권한이 부여된 수출자를 말한다.
- 나. **관세 당국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관세법과 규정¹의 운영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 다.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라.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마. **발급 기관이란** 이 부속서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권한을 부여받고,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된 정부 당국이나 기관을 말한다.

¹ 그러한 법과 규정은 관세, 부과금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각 당사국 관세 영역의 경계를 넘어 통제된 물품의 이동에 대한 금지, 제한 및 통제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에 관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운영되고 집행된다.

- 바.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 사. **원산지 증명**은 수출된 상품이 제4장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정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규칙 2 원산지 증명

1. 원산지 증명은 다음의 형태일 수 있다.
 - 가. 발급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
 - 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또는
 - 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원산지 증명서 및 인증수출자 제도를 이행한다. 이에 더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0년 이내에 이행된다.

규칙 3 발급 기관의 견본 서명 및 관인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발급 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의 목록을 접촉선을 통하여 인쇄본 또는 파일의 형태로 제공한다. 해당 목록의 모든 변경은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제공된다.
2. 발급 기관의 견본 서명 및 관인은 매년 갱신된다. 제1항에 언급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는 수령 당사국에 의하여 인

정되지 않는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참조번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부호, 상품명, 수량, 발급일 및 수출자의 이름과 같은 수출 당사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의 핵심 정보를 포함하는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면, 자국 발급 기관의 견본 서명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4. 가. 인증수출자 지위가 부여된 후 즉시,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안전한 웹사이트에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1)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2) 적용 가능한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서 발급일 및 만료일

나. 안전한 웹사이트가 없는 당사국은 자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가호에 언급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 요구된다.

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다음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통보한다.

- 1) 회사의 법적 명칭 및 주소
- 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6단위² 상품명을 포함하는, 인증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 그리고
- 3) 회사당³ 10명⁴을 초과하지 않는, 서명권자 및 그들 각자의 견본 서명 목록

라. 제4항다호 1목부터 3목까지의 모든 변경은 동일한 방식으로 통보된다.

² 이 요건을 유지한다는 필요성은 이 협정의 이행일부터 1년 후 검토의 대상이 된다.

³ 이 요건을 유지한다는 필요성은 이 협정의 이행일부터 1년 후 검토의 대상이 된다.

⁴ 이 요건을 유지한다는 필요성은 이 협정의 이행일부터 1년 후 검토될 것이다.

인증의 철회나 중단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통보된다.

5. 제4항다호3목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승인한 인증수출자에 대한 핵심 정보를 포함하는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면, 자국 서명권자의 견본 서명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6. 안전한 웹사이트에 포함되지 않거나 통보되지 않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는 수령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규칙 4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양 당사국은 제4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방식으로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규칙 5

증명 서류

1.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발급 기관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를 요청하거나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2.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발급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와 관련된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전자적 증명 서류의 제출을 허용하도록 권장된다.

규칙 6

수출 전 검사

1.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발급 기관에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 전 검사의 요청을 신청한다.

2. 검사 결과는, 주기적인 검토를 조건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언제든지, 그 후 수출될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증명 자료로 인정된다. 수출 전 검사는 그 특성상 원산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규칙 7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

1.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양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의 발급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적절한 증명 서류와 함께 규칙2 제1항가호에 언급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를 신청한다.

2. 발급 기관은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의 매 신청마다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최선의 권한과 능력으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한다.

가.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적절히 작성되고 서명될 것

나. 상품의 원산지가 제4장에 합치될 것

다.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에 기재된 그 밖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는 제출된 증거 서류와 일치할 것, 그리고

라. 상품의 품목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시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가 명시된 대로 수출되는 상품에 부합할 것

3. 동일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에 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것은 허용

된다. 다만, 각 품목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는 A4 용지 크기이며 부록 4-가-1에 규정된 양식이다. 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는 RVC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제9란에 본선인도가격(FOB)을 반영한다.

5.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제2사본 및 제3사본)로 구성된다. 증명서에는 각각의 발급처 또는 발급 관청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한 참조번호를 기재한다.

6. 원본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도록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전달한다. 제2사본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이 보관한다. 제3사본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보관한다.

7. 발급 기관은 발급 번호 및 발급 일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 그리고 상품의 품목명을 포함하여, 발급되고 수락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에 대한 기록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매년 제공한다.

8.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 시에 수입 신고서와 증명서류(즉, 송장 및 요구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를 포함하는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 그리고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를 수입 시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한다.

9.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거부되는 경우, 발급 기관에 특혜관세대우 거절 사유가 적절하게 통보된다.

10. 제9항에 기술된 대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가 수락되지 않을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바에 따라 관세 당국 또는 발급 기관의 해명을 수용 및 고려하고,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위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한 해명은 수입 당사국이 제기한 특혜관세대우의 거절 사유를 다루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할 것이다. 특혜관세대우의 부여 또는 거절에 관한 결정은 해명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발급 기관에 통보된다.

11.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에서 삭제와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변경 시 잘못된 부분에 줄을 그어 지우고 필요한 추가 정보를 기재한다. 그러한 변경은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에 서명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에 의하여 승인되고 발급 기관에 의하여 인증된다. 사용하지 않는 여백은 차후의 추가 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을 그어 지운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가 발급될 수 있다. 발급 기관은 본래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의 발급일을 신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에 명시한다.

12.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는 수출되는 상품이 제4장의 의미에서 수출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우 언제나, 수출 전이나 수출 시 또는 수출 직후, 그러나 선적일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3일 이내에 발급된다.

13.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가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 전이나 수출 시,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3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14.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발급 기관이 보관 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의 제12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발급 기관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 원본의 발급일이 기재된다.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 원본의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다.

규칙 8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상품을 선적하는 수출자(이하 “인증

수출자”라 한다)가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서면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보증을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고,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등록된다.
- 나. 그 수출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 다.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만족스러운 수준의 수출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라. 그 수출자는 원산지 규정에 따른 것을 포함하여,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어떠한 사기 행위도 한 기록이 없다.
- 마.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 관세 당국의 위험관리에 따라 측정된 우수한 준수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 바. 그 수출자는 무역업자인 경우, 자체 인증 대상인 상품의 원산지를 기재한 “제조자 신고서”와 필요가 발생하면 검증에 협조하겠다는 제조자의 준비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 사.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견실한 장부 및 기록 유지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 아. 그 수출자는 수출 전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수출 전 검사는 그 특성상 그 원산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3. 관세 당국은

- 가. 자국의 인증수출자 절차 및 요건을 공표하고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나. 서면으로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 다.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증번호를 제공한다.
그리고
 - 라. 부여된 인증과 관련한 안전한 웹사이트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정보를 교환한다.
4. 인증수출자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가. 작성된 신고서의 정확성에 대한 인증 및 검증의 사용을 감독하는 목적상, 관세 당국에 기록 및 장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 나. 인증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상품으로서, 그 신고서 작성 시에 관련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다.
 - 다.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한다.
 - 라. 검증에 협조한다.
 - 마. 오용을 포함하여, 작성된 모든 원산지 신고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리고
 - 바. 규칙 3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와 관련된 모든 변경을 관세 당국에 신속하게 알린다.
5. 관세 당국은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의 정확성 검증을 포함하여, 인증의 적절한 사

용을 감독한다. 그러한 조치의 빈도 및 정도에 관한 결정은 위험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관세 당국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한 소급적 검증 요청에 대하여 규칙 15에 합치되게 대응할 것이다.

6. 인증수출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대신하여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를 신청할 수 있다.

7. 관세 당국은 언제든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관세 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거나, 달리 인증을 남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규칙 9 원산지 신고서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규칙 2 제1항나호 및 규칙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서면 또는 전자적 원산지 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원산지 신고서는 부록 4-가-2에 규정된 서식으로 작성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가. 영어로 작성된다. 그리고

나.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1) 신원확인 정보를 얻기 위한 상세 연락처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이름
- 2) 상품의 수입자
- 3)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 4)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5)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 6) 상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기준
- 7) 원산지 신고서의 날짜, 그리고
- 8) 제4항나호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신고서의 경우, 그 원산지 신고서가 포괄하는 기간

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다음에 기초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출자의 완전한 인지
- 나.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 다.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에 대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신고서

4.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적절히 작성하여 서명한, 규칙 2 제1항나호 및 규칙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가 다음에 적용가능함을 규정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하나 이상의 상품에 대한 단일 선적, 또는
- 나. 원산지 신고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같은 수입자에 대한 동일한 상품의 복수 선적

5. 규칙 2 제1항나호에 언급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는 상업 송장에 작

성된다. 그러나 원산지 신고서가 수출 시 상업 송장에 작성될 수 없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는 청구명세서나 화물인도지시서 또는 포장명세서와 같은 상업 서류에 작성될 수 있으며, 상업 송장과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수입 시 수락될 것이다.

규칙 10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

원산지 증명의 제시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이 준수된다.

- 가. 원산지 증명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은 발급일부터 12개월 간, 또는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작성일부터 12개월 간 유효하며, 그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 나. 원산지 증명이 그 제출기간의 만료 후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경우로서 불가항력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통제를 벗어난 그 밖의 타당한 이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때, 그러한 원산지 증명은 수락된다. 그리고
- 다. 그 밖의 지연된 제시의 경우, 상품이 규정된 기간의 만료 전에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그러한 원산지 증명을 수락할 수 있다.

규칙 11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제4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신고서를 세관 신고 시 작성한다.

- 나. 가호에 언급된 내용의 작성 시 규칙 2 제1항나호 또는 규칙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한다.
- 다. 적용 가능한 경우, 제4.15조에 수립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지한다. 그리고
- 라. 요구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 증명 및 다호에 언급된 문서를 관세 당국에 제출한다.

2. 수입자가 내용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이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정정된 내용을 작성하고 부담해야 할 관세가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한다.

규칙 12

수입 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수입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경우, 그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시하면 수입일부터 1년 내에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더 긴 기간 내에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고 초과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 가. 원산지 증명 및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 밖의 증거, 그리고
- 나.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하여 관세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그러한 서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를 수입 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규칙 13
원산지 증명의 면제

원산지 증명은 다음의 경우 요구되지 않는다.

- 가.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 또는
-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우편으로 송부된 상품으로서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

다만, 그 수입은 원산지 증명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규칙 14
사소한 불일치의 처리

1. 상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없는 경우, 상품의 수입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내용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서류 사이에 오타와 같은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사실상 상응한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지 않는다.

2. 동일한 원산지 증명으로 다수의 품목이 신고된 경우, 열거된 품목들 중 하나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그 원산지 증명에 열거된 나머지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부여 및 통관이 영향을 받거나 지연되지 않는다. 해당 상품은 규칙 15 제3항라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규칙 15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다음의 순서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에게 추가 정보 서면 요청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추가 정보 서면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 요청, 그리고

라. 수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방문

양 당사국은 그 밖의 향후 절차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으며, 이는 검증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수행될 수 있다.

2. 제1항가호 및 제1항나호의 목적상,

가. 수입 당사국이 작성한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에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요구되는 정보 및 서류를 회신해야 하는 기한은 그 접수일로부터 1개월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더 긴 기간이 될 것임이 적시될 것이다.

나.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1항가호 및 제1항나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를 수령하였고 검증 대상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관세 당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호에 언급된 기간 내에 요구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게 검증을 완료하기 전에 고려될 서면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서면 통보를 최소 1개월 간 제공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3.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 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요청의 수령부터 6개월 내의 현재 원가 및 가격을 기초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원가명세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 나. 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검증 요청은 관련 원산지 증명을 수반하고, 그 이유와 해당 원산지 증명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추가 정보를 명시한다.
- 다. 검증 요청을 수령한 관세 당국은 그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그 요청의 접수 후 3개월 내에 회신한다.
- 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국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행정 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사기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 마. 관세 당국이 검증 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하게 전달하면, 수입 당사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검증의 전 과정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6개월 내에 완료된다.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라호가 적용된다.

4.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1항라호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가. 검증방문을 수행하기 전, 수입 당사국은 검증방문을 수행하려는 자국의 의사에 대한 서면 통보를 다음에 전달한다.

- 1)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2) 적용 가능한 경우,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발급 기관
- 3)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관세 당국⁵, 그리고
- 4) 검증방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자

나. 가호에 언급된 서면 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며,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1)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 당국의 명칭
- 2)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이름
- 3) 제안된 검증방문 날짜
- 4) 검증대상 상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제안된 검증방문의 범위, 그리고
- 5)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함

다. 수입 당사국은 제안된 검증방문 전, 가호에 언급된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받는다.

라. 가호에 따른 통보의 수령으로부터 1개월 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통보 당사국은 검증방문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⁵ 이 호는 인증수출자 및 자율증명제도에 적용된다.

- 마. 통보를 수령한 관세 당국은 제안된 검증방문을 연기할 수 있으며, 통보 수령일부터 15일 내에 그러한 의사를 수입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검증방문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그 방문은 그러한 통보 수령일부터 2개월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더 긴 기간 내에 수행된다.
- 바.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검증방문의 수행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 사.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관세 당국에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면 결정서를 제공한다.
- 아. 정지된 특혜관세대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사호에 언급된 서면 결정서의 수령에 따라 복원된다.
- 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서면 결정서의 수령 후 1개월 내에 상품의 자격에 대한 서면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그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최종 서면 결정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그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수령한 후 1개월 내에 관세 당국에 통지될 것이다.
- 차. 실제 방문 및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 및 그 결과의 관세 당국으로의 통지는 최대 6개월 내에 수행된다. 검증방문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정지에 관한 제3항라호가 적용된다.

규칙 16

기록 유지 요건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한다.

- 가. 자국의 수출자나 생산자 또는 관세 당국은 원산지 증명이 발급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의 발급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수출 당사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그리고

나. 자국의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수입 당사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2. 이러한 기록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여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로 유지될 수 있다.

규칙 17

특례

특정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도착지가 변경된 경우, 그 당사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또는 후에 다음 사항이 준수된다.

가. 특정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이 이미 수입된 경우에도, 그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 제출과 함께 특혜관세대우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승인한다. 또는

나. 원산지 증명에 명시된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도착지가 변경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발급된 원산지 증명과 함께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신규 발급을 서면으로 신청한다.

규칙 18

상품의 전시

1. 제4.1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서의 전시를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보내지고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전시 도중 또는 후에 판매된 상품은 제4장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는다. 다만, 그 상품은 다음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만족할 만한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가. 수출자가 그 상품을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국가로 발송하고, 그 상품을 그 국가에서 전시한 사실

나. 수출자가 그 상품을 수입 당사국의 영역 내 수하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다. 그 상품이 전시를 위하여 보내진 상태로 전시 도중 또는 직후에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되었다는 사실

2.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공된다. 전시의 명칭 및 주소가 기재된다. 상품의 식별 및 전시된 조건을 위한 증거로서, 제4.15조제3항에 규정된 증명 서류와 함께 전시회가 개최된 국가의 관세 당국이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은 전시 동안 상품이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외국 상품의 판매를 위한 무역이나 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나 이와 유사한 전시, 또는 상점이나 사업장에서의 진열에 적용된다.

규칙 19

제3자 송장

1. 수출자 외의 회사가 발행한 송장을 통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은 상품이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수락된다.

2. 제1항의 목적상, 상품의 수출자는 “제3자 송장” 이라 기재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가와 같은 정보가 원산지 증명에 표시된다.

규칙 20
세관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2. 당사국의 접촉선이 제4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제기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그 사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토 결과 및 그 사안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자국의 전문가를 선임한다.
3. 접촉선은 제4장에 따라 제기되는 사안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